

공 고

「난민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(폐문부재·출국)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공고 기간 : 2022.09.21. ~ 2022.10.05.
- 공고 내용 : 난민불인정결정
- 결정 근거 : 「난민법」 제18조제2항
- 결정 사유 : 신청인의 주장은 「난민법」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“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”에 해당하지 않음
- 송달 대상자 및 내용

연번	성명	주소	신청일자	신청번호	결정사항
1	RAZA *	울산광역시	2019.04.05.	CH-BG-19-000018	난민불인정
2	MATKOSIMOV*	진주시	2022.02.25.	MS-BG-22-000004	난민불인정
3	ISLAM*	김해시	2020.10.06.	GH-BG-20-000145	난민불인정

-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난민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「난민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또한,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(담당공무원 최영미 ☎ 051-461-3049)

2022.09.21.

부산출입국·외국인청장